#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7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 박충권·김승수·엄태영

안철수 · 김선교 · 김정재

권성동 · 김성원 · 박준태

김위상 • 박성훈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직접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의 취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정확한 실태 정보 제공와 이에 대한 국민의 성숙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함과 동시에 이 날부터 1주간을 '북한

인권 교육주간'으로 지정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안제2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북한인권 교육주간) 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4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조의2(북한인권 교육주간) 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제4조4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날부터 1주간
	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한
	<u>다.</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
	한인권 교육주간의 취지에 맞
	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
	<u>시할 수 있다.</u>